



FRESH
STRAWBERRY

2015

베트남 신선딸기 시장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I. 베트남 시장 소개	/ 1
1. 경제 및 인구 규모	1
2. 베트남 내의 외국인	3
II. 시장의 동향	/ 4
1. 공급원	4
2. 수요	6
3. 유통 경로	13
III. 통관, 검역, 식품 안전, 위생에 대한 규제 및 요구	/ 15
1. 수입 및 검역	15
2.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	17
IV. 베트남에서 딸기 사업 개발	/ 18
1. 베트남 딸기 시장 개요	18
2. 1단계 : 현재~2018년	19
3. 2단계 : 2018년 이후	22
■ 부록	
1. 규정에 따른 수입 절차	26
2. 대형 슈퍼마켓	32
3. 딸기 수입 식품업체 및 유통회사 명단	33
4. 수입식품 안전위생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규정	35



chapter

I

베트남 시장 소개



1. 경제 및 인구 규모

지난 20년간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현재의 경제구조를 이뤄 왔으며 특히 지난 10년간은 7%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현재의 경제 규모는 20년 전인 1990년대 초에 비해 4배가량 확대되었다.

2014년에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1,700달러였고, 베트남 인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약 1.1%가 증가하여 현재 9,070만 명으로 집계되며, 인구 구조에서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의 인구는 지방의 중심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의 표는 베트남의 주요 다섯 개 지역 및 그 대표 도시의 인구와 1인당 평균 소득을 표시한 것이다.

■ 표1.1. 지방의 중심도시와 인구 및 평균 소득

주요도시	인구(단위 : 천명)	밀도(단위 : 천명/㎢)	평균 소득(VND)
홍강 삼각주			
하노이	6,865.2	20.65	2,940,000
북부 산간 지방			
빙푹	1,022.4	8.26	1,870,000
북중부 및 중부 해안 지방			
다낭	966.3	7.52	2,865,000
남부			
호치민	7,660.3	36.55	3,650,000
껀터	1,218.3	8.65	2,320,000

※ 출처 : 통계총국 생활수준 조사 2013

평균 소득이 높은 대도시 외에 여행과 관광이 발달한 지방과 공업이 발달한 지방의 여러 도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소비자들의 소득이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도시에서는 딸기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 표1.2.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역

주요도시	인구(단위 : 천명)	밀도(단위 : 천명/㎢)	평균 소득(VND)
홍강 삼각주			
하노이	6,865.2	20.65	2,940,000
하이퐁	1,904.1	12.47	2,520,000
꽝닌	1,177.7	1.93	2,550,000
북부 산간 지방			
라오 까이	646.5	1.01	1,080,000
빙푹	1,022.4	8.26	1,870,000
푸토	1,340.8	3.78	1,580,000
북중부 및 중부 해안 지방			
다낭	966.3	7.52	2,865,000
떠이응웬	1,180.1	2.26	1,900,000
동남부			
호치민	7,660.3	36.55	3,650,000
동나이	2,707.8	4.75	2,600,000
빈즈	1,731	6.42	3,600,000
붕따우	1,033	5.2	2,900,000
박리에우	869.3	3.5	2,030,000
끼엔장	1,723.8	2.71	1,950,000
껀터	1,218.3	8.65	2,320,000

※ 출처 : 통계총국에서 생활수준 조사 2013

2. 베트남 내의 외국인

딸기는 호냉성 과채류이기 때문에 냉량한 기후에 강하여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온대기후나 한대기후가 있는 국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주요 수요층으로는 베트남인 중 중산층 이상 소비자 및 베트남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들로 예상된다.

2014년에 베트남 통계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내의 외국인은 모두 7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된다. 그 중에 아시아 국적의 외국인(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58%를 차지하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인이 28.5%, 나머지는 기타 국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 내의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이 높은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정부 기구, 기타 시민 단체에서 근무하며 이들은 딸기의 주요한 소비 그룹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딸기 소비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지만 여행 일정의 변동 등이 심해 수요치를 예측하기 어렵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경제 불황 등의 이유로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매년 8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여행 지역은 팜닌, 하노이, 다낭, 나트랑, 호치민, 붕파우 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딸기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호텔식당 및 편의점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 대상으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chapter

II

시장의 동향



1. 공급원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딸기의 경우 현지인이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두 가지 공급원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공급원에서 공급되는 딸기는 품질과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 국내산

베트남 국내산 딸기는 ‘썬라(Son La)’지방의 ‘목짜우(Moc Chau)’와 ‘럼동(Lam Dong)’지방의 ‘다랏(Da Lat)’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이 두지역의 생산량은 연간 약 1,800톤 정도이다

‘다랏’의 딸기의 총 경작면적은 약 100ha이며, 이 지역의 딸기 품종은 주로 미국 혹은 뉴질랜드 품종이나 일부에서는 프랑스에서 수입한 품종을 재배하기도 한다. 출하 성수기 생산성(12월 중순~3월 초)은 12톤/ha이며 그 외 기간의 생산성은 약 6톤/ha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총 공급능력은 출하 성수기에 1,200톤, 그 외 기간에 600톤에 달한다. 다랏 딸기의 경우 품종과 경작 방법이 생산 단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로 경작이 용이하고 생산량이 많은 미국 품종 딸기는 품질이 좋을 경우 생산 단가가 킬로그램에 65,000~75,000동(약 3,250~3,525원)이다. 품질이 이보다 떨어지는 딸기의 경우에는 킬로그램에 20,000동(약 1,000원)에 저렴하게 팔리고, 주로 잼이나 주스의 원료로 사용된다. 한편, 하노이에서 미국 딸기 소매가격은 킬로그램에 100,000~150,000동(5,000~7,500원)이다.

뉴질랜드 품종은 일 년 내내 수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현대적인 경작법을 활용하여 미국 딸기 못지않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이 좋고 단 맛이 강하며 새콤하고 사근사근해서 가공이 용이하다. 이 때문에 뉴질랜드품종 딸기의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뉴질랜드 딸기는 산지 가격이 미국 품종 딸기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데 보통 킬로그램에 240,000~260,000동(12,000~13,000원)이고, 하노이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킬로그램에 300,000~350,000동(15,000~17,500원) 수준이다. 예외적으로 뉴질랜드 고급딸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의 판매가격이 400,000동(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목짜우’에서는 2009년부터 딸기 재배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발달하지 않고 있다. 공급가능한 생산량은 30톤 이하의 소규모이며 주요 수확기는 3월부터 5월까지이다.

‘목짜우’ 딸기는 일본과 호주 두 가지 품종이 재배된다. 일본 품종의 딸기는 과일이 크고 달지만 호주 품종의 딸기에 비해 향이 떨어진다. 호주 딸기는 향이 좋은 반면 과일이 작고 신맛이 특징이다.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체로 원래의 자연 향기와 맛을 지키고 있다.

두 지역의 상품 외에 ‘꼰뚝(Kon Tum)’유한회사가 ‘꼰프롱(KonPlong)’지방 ‘닥롱(Dac Long)’에서 콩나무와 딸기 재배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3년 후인 2018년에 상품 출하를 계획하고 있으며 딸기 생산량은 한 해 1,200톤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부분은 수출용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베트남 딸기 재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지역의 기후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산량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가격이 변동 폭이 심한 편이다.

1.2. 수입산

베트남에서 딸기의 수입은 2009년 이전에는 선물용으로 매년 200kg이 항공으로 수입되었는데 2009년부터 해마다 수입량이 증가해 오고 있다. 베트남의 딸기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호주이고, 한국 딸기는 검역문제로 수입이 매우 미약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딸기 수입 비용은 114,000달러에 달해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딸기 수입 주요국가 중 미국 딸기가 71%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호주 딸기는 20%이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딸기 수입은 주로 2FM 베트남 회사, V-Food 베트남 합자회사, Hoa Canh Cao Nguyen 합자회사, Vita Fruits 회사 등 4개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 표2.1.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딸기 수입액

국가	2013	2012	2011	2010	2009
(단위 : 달러(USD))					
총	114,965	117,723	83,583	54,490	15,494
한국	10,651	5,733	-	3,250	-
미국	81,486	103,624	78,824	39,390	12,812
호주	22,828	8,366	4,759	11,850	2,682
(단위 : 비율(%))					
총	100	100	100	100	100
한국	9.26	4.87	-	5.96	-
미국	70.88	88.02	94.31	72.29	82.69
호주	19.86	7.11	5.69	21.75	17.31

※ 출처 : 베트남 세관

위에 있는 공급원 외에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는 딸기는 중국에서 소량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통계 수치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2월부터 3월말까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가격이 저렴한 만큼 북부지역에서 소비량이 높다. 중국 딸기를 다른 국가 상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중국 딸기 통계 누락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베트남 내의 딸기 주요 공급원은 자국산 딸기이며 공급량은 한 해 약 1,800톤이다. 수입량의 경우 한 해 약 15톤 정도이며 그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 호주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수요

베트남 소득 수준과 인구구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베트남 시장에서 딸기의 주요 수요층은 도시 개발과 발전이 진행된 주요 도시지역의 중간 소득 이상의 계층, 소득수준이 높은 외국인 근무자 계층, 그리고 관광객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수요에 대한 추정

베트남의 딸기 수요는 다음의 소비계층에 의해 결정된다.

- 관광객 그룹 : 하노이에 위치한 호텔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한 결과 베트남 관광객의 약 10%가 체류기간 동안 100g의 딸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 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매년 약 8%씩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관광객에 의한 딸기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베트남 5대 도시(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다낭, 껀터) 중상위 계층 : 통계청의 생활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대 도시 중상위 소득계층의 비율은 해당 도시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상위 소득계층의 60%가 한 해에 딸기 500g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베트남 5대 도시 딸기 소비 인구 비율은 2015년 현재 약 12%이며 도시 인구증가율에 따라 그 수요계층의 규모는 증가할 것이다(건설부 도시개발기관에서 평가한 도시 인구 증가율은 한 해 약 1.6%임).
- 베트남 내 외국인 근무자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중 40%가 1년에 약 500g의 딸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계부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무자의 증가 비율은 한 해 5.84%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베트남 딸기 시장의 예상 수요(출처 : 베트남 통계총국)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5년 딸기 총 소비량은 1,269톤으로 추정되고 전체적인 평균 소비 증가율은 한 해 약 2.1%에 이를 것으로 보여 2020년은 한 해 소비량이 1,408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표2.2. 딸기 수요의 주요 요소

구 분	인구수(명)	소비율(%)	소비량(g)	증가율(%)
관광객	7,874,000	10	100	8
5대 도시의 수요	19,269,000	12	500	1.6
재외국민	74,000	40	500	5.84

■ 표2.3. 향후 10년간 딸기 수요량 예측

딸기 수요(kg)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수량	1,269,106	1,295,119	1,321,991	1,349,769	1,378,506
관광객	78,803	85,107	91,916	99,269	107,211
5대 도시의 수요	1,174,638	1,193,432	1,212,527	1,231,928	1,251,639
재외국민	15,664	16,579	17,547	18,572	19,657

딸기 수요(kg)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수량	1,408,257	1,439,082	1,471,044	1,504,212	1,538,660	1,574,468
관광객	115,787	125,050	135,054	145,859	157,528	170,130
5대 도시의 수요	1,271,665	1,292,012	1,312,684	1,333,687	1,355,026	1,376,706
재외국민	20,805	22,020	23,306	24,667	26,107	27,632

표2.4. 베트남 시장의 딸기 가격

구 분	사 진	가 격
미국산		400,000동/500g
뉴질랜드산		145,000동/500g
호주산		999,000동/500g
중국산		80,000동/500g

구 분	사 진	가 격
태국산		120,000동/500g
베트남 (달랏)		150,000동/500g
한국산		550,000동/500g

※ 한국산의 경우 2015년 중후반까지는 소량으로 유입되어 대형마트가 아닌 중소형 과일전문점에서 판매가 되었음. 당시 고가에 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즉시 판매가 되었으며, 한국산 딸기는 당도 및 안전성, 상품포장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참고 | 딸기시장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1) 소비자 조사 대상 연령대

- 20대 이하 : 40명
- 20대~30대 : 140명
- 40대~50대 : 20명

조사대상은 인구구성이 가장 많고 소비성이 강한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집중하였고 하노이 100명, 호치민 100명을 기준으로 하였음

2) 소비자 조사 대상 성별

- 남 : 70명
- 여 : 130명

3) 딸기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171
- 없다 : 29

4) 어떤 경로로 딸기를 접하셨습니까?

- 방송 광고 : 34
- 신문, 잡지에서 광고 : 5
- 인터넷에서 광고 : 37
- 포스터, 전단지, 로드 광고 : 25
- 슈퍼마켓에서 광고 : 99

- 딸기의 경우 방송, 신문 및 매체형식의 광고보다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슈퍼마켓이나 판매점 등 소비자들이 쇼핑 또는 길거리 등에서 직접 광고를 볼 수 있는 것이 효율적임

※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딸기

- 당도가 높으며, 신선하고 특히 안전성 검증을 통과한 제품을 선호
- 합리적인 가격,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에 적정해야 할 것

5) 일주일에 딸기를 얼마나 먹습니까?

- 1회 미만 : 131
- 1-3회 : 51
- 3회 이상 : 18

- 1회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주1회 정도 쇼핑을 하면서 딸기를 구입하며, 구입처는 대부분 대형마트인데 이유는 대형 마트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
- 소비자들에게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통 시스템을 강화하고, 슈퍼마켓 외에 시장이나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 등의 판매점을 개발해야 함

7)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 수입 없다 : 10
- 3백만동 이하 : 37
- 3-5백만동 : 81
- 5-10백만동 : 72

※ 딸기는 타 과일 제품에 비해 가격형성대가 높아 월 소득이 베트남 평균 이상인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8) 소비자가 원하는 딸기의 적정가격은 얼마입니까?

- 100,000동 이하/500g : 62
- 100,000동~150,000동/kg : 113
- 150,000동~250,000동/kg : 24
- 가격은 상관없음 : 1

※ 베트남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보통 10만동에서 20만동 사이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가의 과일과 비슷한데 보통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수입체리 또는 망고스틴의 가격대가 10만동에서 20만동임

9) 한국산 딸기를 접할 기회가 있으면 구매할 용의가 있습니까?

- 구매한다 : 181
- 구매하지 않는다 : 11
- 무응답 : 8

10) 어떠한 이유로 한국산 딸기를 구매합니까?

- 안전성 : 88
- 맛 : 65
- 제품용기(선물용) : 37
- 한국의 이미지 : 10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국산 딸기 구매 의향이 있으며, 가장 큰 이유로 한국산제품의 안전성과 맛을 꼽았음. 한국산 딸기의 경우 선물로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포장 등 디자인에도 이러한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1) 어떠한 이유로 한국산 딸기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 가격이 높을 것 같아서 : 6
- 기타 선호하는 제품의 딸기가 있어서 : 3
- 한국의 이미지 : 2

12) 한국산 딸기의 판매증가를 위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 안전성 : 71
- 적절한 가격 : 65
- 광고 : 21
- 포장 : 35
- 판매처의 다양화 : 8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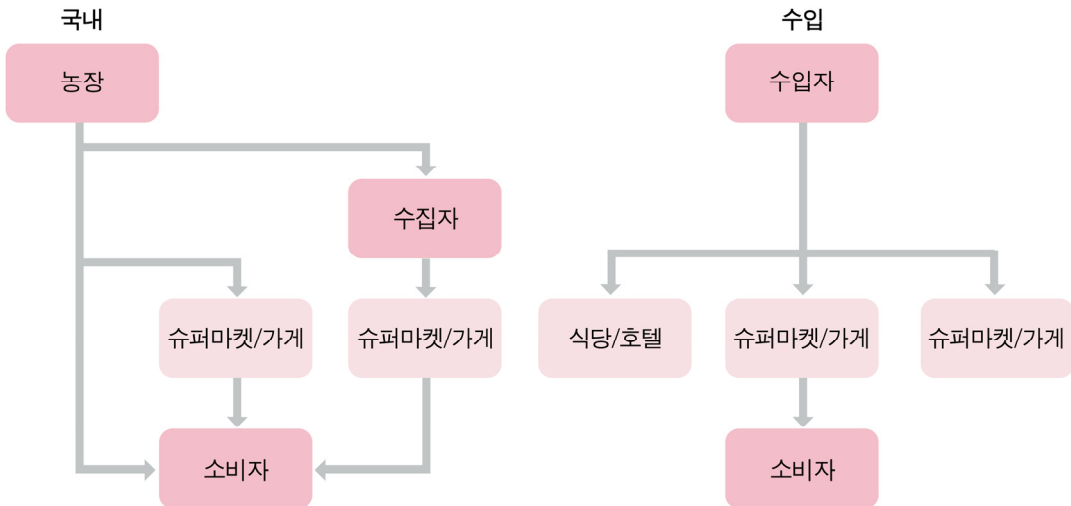
- 베트남 소비자의 딸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품의 안전성 및 가격 그리고 TV, 잡지 등의 기존 미디어 마케팅 보다는 매장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소비자들이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케팅이 중요하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 맞는 전략이 필요
- 통계청에서는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대도시도 급여수준 약 500만 동(25만 원가량)대의 소비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인 딸기의 경우 가격이 가장 큰 결정요소로 작용함. 이에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유통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3. 유통 경로

베트남 국내산 딸기와 수입산 딸기의 유통 경로는 서로 다른 구조로 이뤄져 있다.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의 유통 경로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림2.1은 두 공급원에 따른 유통 경로를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자(과일 판매 전문 기업)가 소매(슈퍼마켓, 호텔, 식당)점에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유통 경로는 수집자가 포함되어 유통 경로가 길어진다. 수입산은 소매상 → 최종 소비자의 유통 경로를 보이는 반면, 국내산의 경우 수집자가 수확기 또는 그 이전에 농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도매시장(롱비엔시장, 하노이랑남시장 등)의 도매업자에게 판매한다.

딸기의 최종 유통단계인 판매처는 슈퍼마켓의 4㎡ 미만 판매대나 노점상이 대부분인데, 슈퍼마켓 야채 주요 소비자는 500만 동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식품 구매를 위해 슈퍼마켓을 방문한다. 반면, 과일 및 야채 노점은 4~10㎡의 면적을 가지며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과일류를 판매하며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하루 안에 과일을 판매하여 슈퍼마켓보다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지만 냉장 등 온도조절 장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그림2.1. 딸기 소비 유통 경로 |

■ 표2.5. 선택의 우선 기준 비교

순서	선택 기준	대상	
		슈퍼마켓	상 점
1	가격	2	3
2	1회 배달 물량 보장	4	5
3	필요한 안전 요구사항 보장	1	1
4	상품의 외관	6	6
5	다양한 종류	3	2
6	법인 자격이 있는 제공 업체	5	4

※ 출처 : 2012 통계총국 조사

위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슈퍼마켓, 상점 모두에서 상품선택의 우선기준은 안전사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딸기의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 채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매상은 매장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입업체로부터 딸기를 직접 구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송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운송설비 및 식품보관에 대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표2.6. 슈퍼마켓과 전문과일/야채 판매 표준 비교

대 상	슈퍼마켓	상 점
과일/야채 공급업자 선택 기준	- VietGAP, GlobalGAP 증명서 보유 - SX RAT 자격 증명서 보유	- SX RAT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식품 안전 위생 증명서 보유 - 많은 수량 처리 가능
선호하는 공급업자	- 과일, 야채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협동 조합	- 과일, 야채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협동 조합
품질 표준 및 식품 위생	- VietGAP, GlobalGAP 기준 충족 - 식품에 따라 다른 기준이 있음	- VietGAP, GlobalGAP 기준 충족
과일/야채 매장의 수	- 많지 않음	- 도시 전체에 많이 분포
과일/야채의 종류	- 비교적 다양함	- 매우 다양함 - 슈퍼마켓에 비해 더 신선함
운송 수단	- 전문 운송 차량	- 오토바이, 트럭
공급 업체와의 관계	- 매일	- 매일
공급 업체와의 매매 방식	- 공문서 계약	- 공문서 계약 - 구두 계약
공급 업체 지불 방법	- 일반적으로 배송 후 30일 계산	- 배송시 계산
소비자 가격	- 전통 시장에 비하여 가격이 30~100% 더 높음	- 전통 시장에 비하여 가격이 10~30% 더 높음
공급 업체에 대한 지원	- 슈퍼마켓 본사(Metro, Co-op, mart)가 생산 인프라 건설과 기술 훈련을 도움	- 없음

※ 출처 : 2013 통계총국 조사

chapter

III

통관, 검역, 식품 안전,
위생에 대한 규제 및 요구

1. 수입 및 검역

1.1. 수입

한국에서 수입하는 딸기의 경우 2015년 5월 5일 체결한 한-베트남 FTA협정에 의한 관세기준에 따라 수입관세가 0%이며, 이는 2016년 및 2017년에도 계속 유지된다. 딸기의 수입코드(HS 코드)는 0810.10.00이며, 0%의 수입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업체는 이미 발효 중인 한-베트남 FTA 수입관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딸기 수입 규칙

■ 표3.1. 베트남으로 딸기 수입 때 필요한 서류

수출 상품 : 라벨 있는 포장 딸기		
수입 때 필요한 서류	제조국	비고
1. 베트남으로 수입 전에 수출 국가에 식품 검역 증명서 2. 상품 공포를 위해 샘플, 라벨, 스탬프의 이미지 3. 상품의 성분을 분석하는 표 4. 수출국에서 자유 유통 증명서 5. HACCP/ISO 기준을 달성하는 증명서 6. 검사하기 위해 샘플 제공 7. 원산지 증명서 8. 판매 계약, 송장, 포장 리스트	한국	
진행 수속	수입국	비고
1. 해당제품의 샘플 2. 식품 안전 위생국에서 성분검사 3. 통관 수속, 검사 수속 4. 식품 검역	베트남	

2) 딸기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항목

■ 표3.2. 딸기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국	HS 코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비 고
한국	0810.10.00	0	10	식품검역 필요
태국	0810.10.00	0	10	식품검역 필요
일본	0810.10.00	4	10	식품검역 필요
호주, 뉴질랜드	0810.10.00	5	10	식품검역 필요
인도	0810.10.00	7.5	10	식품검역 필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경우 베트남 기업 세무제도에서 규정하는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딸기 수입 판매와 관련하여 기업 소득세율은 영업이익의 22%이다.

베트남에서의 상품 부가가치세율은 가격의 10%이다.

수입 통관 수속은 일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1.2. 검역

베트남에서 한국의 딸기를 수입, 판매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검역 규제에 볼 수 있다. 딸기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식품검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산물 품목군에 속해 있다. 농산물 검역은 각 지역 식물 보호국에서 실시하며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검역 통과 증명서를 발급한다.

농산물의 검역은 다음 공문서에 준하여 실시된다.

- 검역 대상 수출입 통관과 수입 후 검역 순서, 수속 규제에 대한 33/2014/TT-BNNPTNT(2014년 10월 30일)
- 농업 및 농촌개발부 장관이 고시한 2515/QP-BNN-BVTV이 결정한 식물 검역강제 목록에 딸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관, 유통 전에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1.3. 통관에 대한 규정

- 상품에서 검역용 샘플 채취
- 검역 당국에 해당 서류와 샘플을 제출
- 검역 당국으로부터 검역 통과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규정된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

1) 수입 딸기에 대한 식품 검역 규정

- 딸기 검역을 받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검역 증명서를 제출한다.
- 검역 인증 소요기간 : 3~5일(관행상 1~3일 소요되는 경우도 많음)

2) 수입 딸기 검역에 필요한 서류

- 상업 송장, 포장 목록, 선적 선하증권
- 수출국 검역 증명서

2.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

정부는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 55/2010/QH12 식품안전 위생법을 제정하여 합법화하였다. 법률 제정 이후 정부, 농업 및 농촌 개발부, 보건부가 식품 안전과 위생과 관련한 여러 조례를 발표하였다.

- 수입 식품의 품질과 식품 안전 위생에 관한 국가 검역 규정 23/2007/QD-BYT
- 식품 안전 법률 및 정부 시행령 38/2012/ND-CP
- 국제 상품 판매 활동 및 상점의 외국 상품 판매와 가공, 통관에 관한 상업법률
- 상품 교역에 따른 수출관세, 수입관세 규정 164/2013/TT-BTC

현재 베트남에서 딸기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채, 과일, 차류 안전생산관리 규정 (59/2012-TT-BNNPTNT)”를 준수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 관리 인증서(VietGAP)”를 취득해야 한다. 야채, 과일, 차에 관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관리 인증규정(VietGAP)이 가장 완벽한 규정 및 규칙으로 인정받고 있고, GlobalGAP과 AseanGAP을 조합하여 SPS 협정에 따라 규정한 것이다. VietGAP 표준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하는 규정은 식품 안전 위생, 노동자의 안전, 환경 보호, 근원 추적의 4가지 기준의 기반이 된다. 허나 지금까지는 VietGAP 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나 개인이 적으며, 그럼에도 고급 대형 슈퍼마켓 등에 입점하거나 물품 공급하기 위해서는 VietGAP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chapter

IV

베트남에서 딸기 사업 개발



1. 베트남 딸기 시장 개요

베트남의 딸기 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기업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 딸기 시장의 주공급원은 ‘람동(LamDong)’지방의 ‘다랏(Da Lat)’과 ‘썬라(Son La)’지방의 ‘목짜우(Moc Chau)’이다.

수입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며 대부분의 소비가 대도시의 중상위 소득 계층, 관광객, 외국인 근무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통 구조가 단순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하는 대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근래에는 딸기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입소문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의 진열 판매와 과일야채 상점에서의 판매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나 대중매체나 언론 등을 통해서 특정 브랜드의 딸기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원산지가 명확한 딸기는 주요 대도시 소비자, 관광객,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해 소비되고 있으며, 유통 채널이 아직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 되지는 않았다. 현재의 공급량은 소비 수요의 일부인 약 40%이며 향후 경영 및 마케팅 기법의 발전에 따라 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공급이 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의 딸기 시장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며 전문적인 경영이나 투자자가 부족하여 브랜드 개발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딸기가 시장에 유입되어 상품의 질을 저하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베트남 딸기 시장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긍정적인 측면 : 상대적으로 약한 시장 경쟁,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과 인지도 상승, 베트남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 등이다.
- 부정적인 측면 : 농산물 검역 규정이 까다로운 점, 소비 수요가 광범위하지 않고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 국내산인 것처럼 중국 딸기가 유통되고 있으며 수입산 딸기는 가격이 고가라 수요층이 한정적이고, 온순 기후의 습한 열대 기후인 베트남에서 딸기를 보관하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요인을 바탕으로 베트남 딸기 시장을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2. 1단계 : 현재~2018년

2.1. 개발 방향

이 기간은 수입관세가 0%이나 한국 딸기 식품 검역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검역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VietGAP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브랜드 개발에 집중하고 수입물량은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2.2. 대상 고객

베트남 5대 도시 중상위 소득계층, 관광객, 외국인 근무자 등 3개 그룹의 수요처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은 여성의 취업율이 높은 국가이며, 그러한 특징들로 인해 주로 슈퍼마켓이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이들은 소셜커머스(facebook, lamchame.com) 등을 통해서도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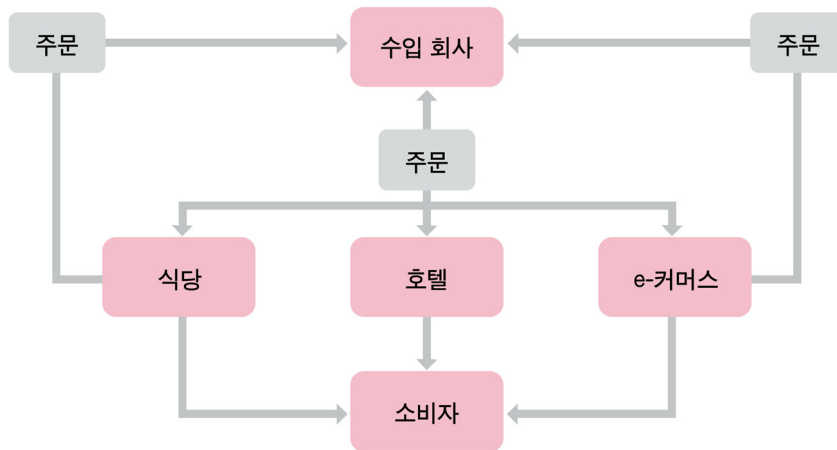
외국인 근무자들은 주로 하노이와 호치민에 집중되어 있고 그 두 도시에서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생활하고 있다. 하노이의 경우 주로 Tay Ho지역에 거주하며 독신자들은 My Dinh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그룹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슈퍼마켓에 가는 소비 습관을 가지며 영어 또는 외국어를 사용한다.

관광객들은 주로 숙박시설이나 그 인근을 대상으로 소비 시장을 형성한다. 고객을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따른 분배 및 상품 마케팅을 위한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2.3. 유통 채널

그림4.1은 베트남에서의 유통 채널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딸기의 경우 보관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유통 채널은 짧을수록 유리하다.

딸기 공급은 소비 단위들(식당, 호텔, 기타)로부터 미리 수요를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선주문 수요는 기존의 딸기 수요자들이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기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수입 회사는 일주일간 상품을 수입, 저장,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림4.1. 딸기 유통 채널 제안(2018년까지) |

2.4. 마케팅과 물류

1) 마케팅

한국 딸기에 대해 원산지의 안전성, 맛과 영양, 미용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춰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홍보하는데 집중한다.

또한 중상위 소득계층과 외국인 근무자 등 주요한 딸기 소비계층에 대한 메일 홍보,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수립한다.

2) 물류

한국-베트남 운송 : 항공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노이바이, 다낭, 탄선랏을 이용한다.

베트남 내 내륙 운송에서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0.5~20톤).

작은 수량을 취급하기 위해서 수입회사는 대표사무실을 개설하고 최소한 베트남에서 상주할 한국 직원 1명, 계약 및 주문 운송 등을 담당할 베트남 직원 1명, 행정을 담당할 베트남 직원 1명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이후 시장이 발전하면 회사는 법인화하고 다음 단계로의 준비를 시작하면 될 것이다.

■ 표4.1. 해상 화물 견적(부산, 인천 - 베트남)

번호	세부사항	가격
1	Busan - Hai Phong Oceanfreight : 시간 6 days	550USD/20'RF - 800USD/40'RF
2	Inchon - Hai Phong Oceanfreight : 시간 6 days	600USD/20'RF - 900USD/40'RF
3	통관 서비스	70USD/20'RF - 80USD/40'RF
4	화물 Hai Phong - Ha Noi	250USD/20'RF - 300USD/40'RF
5	보세창고	250USD/20'RF - 410USD/40'RF
6	위생검사	100USD/20'RF - 120USD/40'RF
7	수입세 HS Code 0810,10,00	0%
8	VAT	10%

■ 표4.2. 항공 화물 견적(부산, 인천 - 베트남)

번호	세부사항	가격
1	국제화물 Busan - Vietnam	2USD/KG
2	국제화물 Inchon - Vietnam	1.8USD/KG
3	통관 서비스	기본 100USD
4	화물운송료(1ton냉장차기준)	공항 - 300USD/100KM 초과시 - 10USD/KM
5	위생검사	50 - 100USD
6	수입세 HS Code 0810,10,00	0%
7	VAT	10%

3. 2단계 : 2018년 이후

3.1. 개발 방향

1) 명확한 브랜드로 사업 진행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원산지를 잘 모르는 과일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일 수입 매장은 고객을 위한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구매처가 되고 있다.

수입 매장들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통해 명확한 라벨이 있는 깨끗한 과일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항상 만족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서비스, 편익, 높은 제품 품질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의 직원들은 고객이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친절한 응대를 통한 고객만족, 매장의 청결 및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산 딸기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 또한 필수적이다.

또한 분기별 또는 딸기 입점 시점에 맞춰 매장 내 판촉행사를 하는 것도 베트남 소비자들의 특성상 좋은 마케팅이 될 수 있다.

2) 온라인 판매

① 판매 웹사이트 개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은 온라인 마켓이다. 전자 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판매 및 구매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점차 온라인마켓으로 소비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기존의 오프라인 판매 매장들도 점차 온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매장운영을 통해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매일 먹는 과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문적인 온라인 매장 운영이 중요한 이유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많은 온라인 매장이 품질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유럽, 미주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수입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실제 이미지와 함께 소개되고, 각 제품에 대한 수입 제품 원산지 증명서도 공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림4.2. 판매 웹사이트의 예

수입 과일의 가격은 베트남 소비자의 평균 소득 수준에 비해 다소 높으나, 주로 특별한 날에 친구와 친척, 또는 사업 파트너에게 선물 등의 용도로 구입하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는 세련된 포장과 선물 바구니, 축하 카드, 장식 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매장에서의 수입 진열 및 전시

맛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먹는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전시 및 진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산 과일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딸기 또한 매장마다 식품안전성 인증 및 원산지 표기로 더 많은 베트남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지속적인 매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환불 및 교환을 해주는 영업전략을 펼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한국산 딸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베트남은 기념일이 많은 나라이다. 각 기념일마다 선물용 포장 및 특별 프로모션 행사를 연계한다면 기념일 특수를 누릴 수도 있다.



|그림4.3. 매장 진열 및 전시의 예|

③ 매출 확대 전략

현지 소비자 대상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한국산 딸기를 홍보해야 한다.

- 대중 매체 광고
- 소비자 대상 제품 팸플렛 배포 및 시식행사
- 우수고객 초청, 국제회의, 자선과 스폰서 활동 수행 등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미팅
- 제품 소개 매장 확대, 박람회 참여 등 지원

3.2. 대상 고객

딸기 소비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주소비자 타겟을 대도시뿐만 아니라 1급, 2급 도시(현재 41개)로 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도시의 경제중심지는 고소득 계층이 밀집한 지역이며 슈퍼마켓 등의 유통구조가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가 단순하여 타지역에 비해 매출에 유리한 지역이며,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통 채널을 단일화하여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3. 물류

베트남은 대규모 저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신선농산물 보관에 적합한 냉장시설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장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준비가 필요하다.

운송은 운송 전문 업체에 위탁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물류 운송 시스템은 신선, 가공식품 뿐 아니라 비료의 저장, 농기구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별개의 냉동, 냉장창고를 설치하는 것도 현지화 된 투자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부록1

규정에 따른 수입 절차

신고서 접수, 검사, 등록, 분류(1단계)

1. 세관 시스템은 세관 신고자가 이전에 신고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검색, 검사하여 신고자에게 이를 안내하며 세관 신고서를 발급해 준다. 세관신고자에게 세관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할 경우 세관지국은 수입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을 안내해 준다.
2. 기업이 제출, 제시한 증서를 접수 후 검사한다. 이 증서에 문제가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3가지 사항을 내역서에 작성한다.
 - 수입자(회사)의 세금코드 :
 - 수입자(회사) 명칭 :
 - 처리 내용 : 처리 내용을 명확히 언급한다(예를 들어 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세관지국장이 내역서, 기업 제출 증서 위에 서명 후 세관총국에 제출한다(접수 주관기관 : 팩스번호 04.39440644).
4. 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지국은 세관 신고자가 제출한 서류를 2영업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세관 서류 검사(2단계)

세관 서류검사란 제38/2015/TT-BTC호 고시 제16조항에 기재된 규정에 따른 세관 서류 일체를 세부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a) 검사내용

세금 신고자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세관서류에 속한 증서를 충분히 접수한 뒤 지국장의 지도 의견 및 신고서 정보검사 모니터링을 통과한 VCIS시스템(만약 있으면)의 작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류 검사, 위기 가이드라인 및 창고, 항구, 관문 내 하역 과정에서 스캔 기계를 통과한 화물 검사 결과, e-Customs(전자세관 시스템) 시스템 위에서 검사 구역을 통과한 화물 운송 정지 정보, 세관 공무원은 제38/2015/TT-BTC호 고시 제II장 제3절에서 기재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유의하여야 한다:

컨테이너 운송 세관 신고서에 대한 컨테이너 명목을 신고하는 정보를 검사 한다.

컨테이너 운송 수입 화물 경우에(“운송방식코드” 혹은 “컨테이너 수량”이란 기준으로 인식한다) 세관 공무원은 VNACCS(HYS 업무를 통과한다) 및 e-Customs(신고서의 “신고서와 첨부된 컨테이너 명목”이란 tab부분)시스템 위에서 신고한 컨테이너 명목을 검사, 비교한다. 검사 이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컨테이너 명목은 VNACCS 시스템에서 신고되지 않거나 VNACCS 시스템에서 신고 된 컨테이너 명목이 세관서류에 있는 증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조항 제 b.1.1호에서 안내한 보충 신고를 진행하도록 신고인에게 요청한다;
2. VNACCS 시스템에서 신고된 컨테이너가 세관서류에서 있는 증서에 부합하나 e-Customs 시스템에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e-Customs 시스템에서 신고한 정보가 VNACCS 시스템에 신고한 정보와 다를 경우에 : 세관 공무원은 시스템(CEA업무) 검사 완료 이후 “M” 기능을 통과하여 e-Customs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VNACCS(IHY/MSO 업무를 통한) 시스템에서 신고한 컨테이너 명목을 인출한다. 신고서의 컨테이너 명목을 입력한다(등기한 세관기관).
3. 세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 기준 검사 : “수호, 기호”; “가치신고내역”; “비고 항목”; “기업 내부 관리대장”; “화물 묘사”; “세금 보류 운송에 대한 목적지”; “형태 코드” 등과 같은 이런 기준을 기록은 제38/2015/TT- BTC호 고시 제II부록에서 기재한 부록에 결맞음을 확보해야 한다.

b) 검사 결과 처리

세관 공무원은 VCIS 시스템의 검사 결과를 기록하며 제38/2015/TT-BTC호 고시와 첨부된 발행된 제V부록에 있는 제06/PGKQKT/GSQL호 별칙에 의거한 검사 결과 기록표 제1절위에 기록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서류 검사 시에는 신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며, 세관서류에 속한 증서 및 시스템에서 신고한 정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 세관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IDA01/EDA01(A 코드) 업무를 통한 “세관의 지시”로 보충 신고를 하도록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위반 행위를 확정하는 정보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 처리토록 위반 진술서를 작성하며 그 서류를 관할기관에 발송한다.

신고인은 세관 신고를 위한 별도 보증을 사용하나 세관기관에서 정한 세액이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더 높으면 신고인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을 통보하고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지급 방식을 안내한다.

- (1) 세관기관에서 정한 세액에 해당된 새로운 보증을 사용한다.
- (2) IDA01/EDA01(A코드) 업무를 통한 세액 납부 방식으로 납세를 신고한다.
- (3) 신고인은 세관기관에 신고한 별도 보증을 사용할 것을 선택하며 세관기관에서 정한 세액과의 신고한 차액을 납부하였을 경우에 신고인은 IDA01/EDA01업무를 통과한 즉시 납세 방식을 재신고한다(세액 기한을 결정하는 코드를 “A”에서 “D”로 바꾼다). 세관기관이 발행하여 신고인에게 발송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결정은 개별 보증과 즉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관련된 정보를 명백히 기록해야 한다.

신고인은 신고를 위한 개별 보증을 사용하나 세관기관에서 정한 세액이 신고인이 신고한 세액보다 더 적으면 신고인에게 IDA01/EDA01 업무(A코드)를 통과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통보한다.

창고, 집하장, 항구, 관문 지역 하역 과정에 수입 화물 스캐너 검사 결과에서 위반 증후가 적발되거나 e-Custom 시스템에서 화물을 실제로 검수하라는 알림이 뜨면 세관공무원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 업데이트”란 항목에 수공(공무원이 화물을 직접적으로 검사), 샘플 채취(만약 있으면) 형식으로 화물을 실제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지국장에게 의견을 제의한다. CK0 업무로써 채널(CHANNEL)분류에 대하여는 화물 보관 지점이 신고서를 등록한 세관지국의 관리에 속하면 세관지국장은 검사 형식, 정도를 결정한 뒤 실태를 근거하여 세관 공무원이 2차 혹은 3차를 실행하도록 업무 분장을 한다.

c) 화물 통관 경우

신고인의 세관신고서에서 기재한 화물 통관 요청(“BP 요청 사유 코드”란 기준 에서 신고한 보증을 사용하면)에 근거하여 세액을 납부한다. 공무원은 서류 검사-신고서 정보 검사 화면 위에서 화물 통관허가를 제안한다. 지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세관 신고인은 시스템 위에서 보증을 진행하는 바탕으로 수입 화물 통관을 요청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CEA업무를 통과하여 화물 통관 허락 심사를 완성한다(1차);
- 화물 통관 이후 제38/2015/TT-BTC호 시행령 제33조에서 기재한 규정에 근거하여, 통관일 경우 공무원은 통관 조건을 검사하도록 CEA(2차) 업무를 진행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가드라인에 따라 진행한다. 신고인은 납세 혹은 세금액이 0이 되는 바탕으로 수출입 화물 통관을 요청하거나 보증을 진행했으나 시스템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BP 요청 사유 코드”란 기준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 세금 신고인은 세금 의무를 완료하고 공무원은 e-Customs 시스템 위에서 화물통관 결정을 업데이트 한다.(B 기능을 통과하여 검사 지점으로 화물 보관/운송을 위한 화물 통관/운송-화물 통관);
- 화물은 통관한 뒤 제38/2015/TT-BTC호 시행령 제33조에서 기재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 업데이트”란 칸에서 검사 결과를 업데이트한다. 통관 경우에 속하면 공무원은 통관조건을 완성하도록 시스템 위에서 CEA/CEE업무를 실행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속하면 세관공무원은 가드라인에 따른다.

d) 보관용 화물 운송 요청 경우

제38/2015/TT-BTC호 시행령과 제V부록의 제09/BQHH/GSQL호 별칙에 따른 세관 신고인의 보관용 화물운송 요청서 혹은 제38/2015/TT-BTC호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2호에서 기재한 규정에 따른 검사용 다른 지점으로 화물을 운송할 것을 요청한 전문 검사 기관의 서류에 근거하여 세관공무원은

제08/2015/NĐ-CP호 법령 제32조 및 제38/2015/TT-BTC호 시행령 제 32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보관용 화물 운송 허락 조건으로 신고 정보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세관공무원은 지국장에게 시스템 위에서 승인을 받도록 제안하고 신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화물이 보관용 운송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고인에게 IDA01업무(A코드)를 통과하여 “세관의 지시”로서 세관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동시에 신고서 정보, 서류 검사 화면에서 “담당 공무원의 의견 업데이트”란 칸에서 보관용 화물 운송 미허락 사유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나 세관 신고인은 보관용 화물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위반한 기업 명목에 속하나 화물은 관문에서 진행하지 못하면 세관 공무원은 세관 지국장에게 가드라인 대로 전문 검사 기관의 요청에 따른 보관용 화물 운송 허락을 고려, 결정할 것을 요청한다.

보관용 화물 운송 조건에 부응하면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서류 검사를 진행한다;

- 서류 검사 - 신고서 정보 검사 화면에서 “담당공무원의 의견 업데이트”란 칸에 보관용 화물 운송 승인을 지국장에게 제기한다. 그중 보관용 화물운송 승인 근거를 세부적으로 기재한다;
- 지국장은 “지도자의 의견”라는 칸에 승인 한 뒤 신고인에게 IDA01 업무(B코드)를 통한 세관 신고서 위 “세관의 지시”라는 칸에 보관용 화물 운송 허락을 통보한다. 통보 내용은 보관용 화물 운송 허락 지점 명칭과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 보관용 화물 운송 결정을 e-Customs 시스템에서 업데이트 한다(B기능을 통과한다. 보관용 운송-검사 지점으로의 화물 운송/보관용 화물운송/화물 통관). 화물은 e-Customs 시스템에서 보관용 화물 운송 허락 결정을 업데이트를 하였으나 시스템에서 보관용 화물운송 허락되지 않은 기업이라는 정보가 나오면 공무원은 신고서를 “보관용 운송” 상태를 지속 할 것인지 지속하지 않을 것인지 정보를 재검사 한다. 만약 신고서를 “보관용 운송” 상태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지국장에게 보고하고, “지도자의 의견”이라는 칸에 승인을 받는다. 그 후 세관 신고인에게 IDA01 업무를 통과한 세관 신고서 위에 “세관의 지시”라는 칸에 보관용 화물운송 미허락에 대하여 통지한다.
- 전문 검사기관이 발송한 검사 결과 혹은 신고인이 세관기관에 직접적으로 제출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선착 정보를 사용한다), 공무원은 이를 검사하고 세관 신고서에서 기재한 정보와 비교한다. 만약 화물 패키지가 수입 허락 조건을 충족시키면 세관 공무원은 IDA01업무(“허가서의 번호” 기준)를 통과하여 시스템으로 전문검사 결과를 보충하며 CEA 업무로써 통관 조건 검사를 완료한다; 만약 화물 패키지가 수입 허락되지 않으면 현행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신고인은 전문 검사기관의 결과를 규정 기한에 맞춰서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공무원은 위반 진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인은 세관기관의 조치 결정을 인정한 뒤 세관수속을 지속적으로 한다.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신고인이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 신고서를 등기한 세관지국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보관용지점이 있는 세관기관과 협조한다. 검사 순서 및 결과조치는

제38/2015/TT-BTC호 시행령 제32조 제7항에서 기재한 규정에 따른다. 검사 시에는 기업이 도주, 주소 없는 경우, 해산, 파산이 확정되면 법률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전문 관리기관, 국내세금기관, 공안기관으로 정보를 넘겨주며 동시에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담당 공무원의 의견 업데이트”라는 칸에 시스템에서 유관 기관으로 통지하고 PAI/PEA 업무를 통과한 시스템 위에 수공 처리로 변경토록 조치를 한다.

- 신고서 중의 하나가 전문 검사상 요구를 만족 및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강제로 재수출/처분으로 처리해야 하며 신고인에게 IDA01(B코드)업무를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의견 업데이트”란 칸에 만족 및 만족시키지 못한 화물 수량을 기록한다. 조건에 만족시킨 부분에 대한 통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세관 신고인에게 전문 검사 요구를 만족시킨 화물만 신고하도록 보충할 것을 안내해 준다. 신고서 보충 정보에 근거하여; 세관 공무원은 검사하고 지국장에게 시스템의 승인을 하도록 제안한다. 지국장이 승인한 뒤 공무원은 시스템 외부 재수출/처분을 강제로 해야 할 화물 수량을 검사, 지속 관리토록 CEA를 진행한다.

화물 실제 검사(3단계)

제38/2015/TT-BTC호 시행령 제29조항에서 기재한 규정 및 지국장의 지시에 의거 화물을 실제적으로 검사한다. 화물 검사 결과는 세관 신고인의 신고 정보대비실 제 수출입의 화물의 부합성/미부합성 내용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동시에, 세금을 사출하기 위한 근거가 되도록 화물상 정보를 충분히 확정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의견 업데이트”란 칸에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표에 기록되어야 한다. 별도로 검사 결과표에 기록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 b.1) 신고와 맞춰서 검사된 화물 경우에 공무원은 검사 기록표에서 나온 검사형식에 해당된 IIA 혹은 IIB 절에서 1호, 2호, 4호에서 화물 검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 b.2) 안내된 검사 형식, 정도에 따른 검사 과정에서 화물 실제와 세관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확정 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 공무원은 화물을 검사하고 IIA절 혹은 해당된 IIB절 제 1호, 2호, 4호에서 검사 결과를 기록한다. 의문내용 및 검사 형식, 검사 정도 증가 제안(만약 있으면)을 검사 결과 기록표 제II.A절 혹은 제II.B절 제3호 칸에서 기록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의 의견 업데이트”란 칸에서 표에서 기록된 의문 내용 및 조치 제안, 검사 결과를 업데이트한다.

세금, 요금, 비용에 대한 의무 완료 검사(4단계)

1. 세금 징수

- a) VNACCS에서는 시스템에서 업데이트된 세관 신고인의 정산을 바탕으로 세관 신고서의 납세를 자동적으로 검사한다.

b) VNACCS에서는 세관 신고서의 납세 의무 완료를 자동적으로 검사하지 않을 경우에:

b.1) 세관 신고인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세관기관은 자금 징수 영수증을 발행하면 화물 패키지를 통과하도록 VNACCS 시스템으로 정보를 자동적으로 이전하고 집중적 회계 시스템으로 그 영수증을 업데이트 한다;

b.2) 세관 신고인은 징수 협조 협약을 체결한 은행 혹은 국고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집중적 회계 시스템에서 통관 대기 중인 납세 의무 완료 확인 정보가 아직도 뜨지 않으면 신고인은 세금 의무 완료를 증명한 증서를 제출할 경우에 신고서를 등기하는 곳의 세관 지국은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b.2.1) 공무원은 세관 절차를 처리한다:

b.2.1.1) 세관 신고인에게 제공된 은행/국고의 확인이 있는 국가예산으로 입금된 증서에서 기록된 정보를 검사하고 은행/국고로부터 입금시키는 정보 시스템과 비교한다. 자금 납부 증서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금납부증서에 대한 정호를 명확하도록 송금하는 은행/국고에 연락한다. 자금 납부 증서를 검사한 뒤 인정받으면 차후 단계에 들어간다;

b.2.1.2) “2. 데이터 입력/J. 세금 의무 완료 확인서/”란 기능을 통과한 집중적 회계 시스템으로 자금 납부증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1.증서 입력”은 관련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한다;

b.2.1.3) 은행에서 발행하였으며 증서 확인 도장도 찍었고 세관기관으로부터 사용된 증서에 대하여는, 은행에 원본 미취소 발급을 요청하고 신고인에게 반납해 준다;

b.2.1.4) 집중적 회계 시스템으로 업데이트된 자금 납부증서를 보관한다(세관신고인의 확인이 있는 사본).

b.2.2) 세금에 대한 처리 : 매일 세관수속 시 공무원이 자금 납부증서 검사 및 회계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한다.

서류 관리 및 완료(5단계)

“통과”, “화물 통과”, “보관용 화물 운송”이 승인된 서류 검사, 관리 및 완료 업무를 맡긴 공무원은 세관서류에 속한 지연이 허락된 원본증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세관 수속을 완료하지 못한 애로가 있으면 지국장은 지연된 증서 원본을 접수하고 화물 패키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도록 연속적으로 업무를 맡긴다. 완료이후 규정대로 서류가 충분하면 서류 관리, 보완, 보관 담당공무원에게 넘어가게 된다.

부록2

대형 슈퍼마켓

슈퍼마켓 이름	주 소
Citimart VinCom	Ha Noi, Hai Ba Trung, Ba Trieu 91
Citimart Ha Noi Tower	Ha Noi, Hoan Kiem, Hai Ba Trung, 49
Big C 슈퍼마켓	Ha Noi, Cau Giay, Tran Duy Hung, 222
Thang Long 슈퍼마켓	Ha Noi, Le Xuan, 87-89
Thai Ha 슈퍼마켓	Ha Noi, Dong Da, Thai Ha, 174
Seiyu 슈퍼마켓	Ha Noi, Dong Da, Pham Ngoc Thach, 8
Sao Ha Noi 슈퍼마켓	Ha Noi, Dong Da, Cat Linh, 36
Quan Nhan 슈퍼마켓	B1 Quoc Te Thang Long, Cau Giay, Ha Noi
Fivimart 슈퍼마켓	17 Tong Dan, Hoan Kiem, Ha Noi,
Ha Noi 슈퍼마켓	51 Le Dai Hanh, Hai Ba Trung, Ha Noi,
Elmaco 슈퍼마켓	240 Ton Duc Thang, Dong Da, Ha Noi,
Intimex Bo Ho 슈퍼마켓	22, 23 Le Thai To, Hoan Kiem, Ha Noi,
Metro 슈퍼마켓	Ha Noi, Tu Liem, Pham Van Dong
Trang Tien 슈퍼마켓	Ha Noi, Hoan Kiem, Hai Ba Trung, 24
Bao Quang 슈퍼마켓	Ha Noi, Cau Giay, Lang Ha, 23
Bach Khoa 슈퍼마켓	Ha Noi, Hai Ba Trung, Bac Khoa, E7
Rosa 슈퍼마켓	Ha Noi, Bac Linh Dam, CT4A
Co-op Mart 슈퍼마켓	18, An Duong Vuong, P9, Q 5, Ho Chi Minh
Citimart Minh Châu 슈퍼마켓	369, Le Van Sy, P12, Q3, Ho Chi Minh
Big C 슈퍼마켓	354, Hung Vuong, Huyen Binh Chanh, Ho Chi Minh
Metro 슈퍼마켓	An Phu, Q2, Ho Chi Minh
Foodcomart 슈퍼마켓	1 đường 3 tháng 2, P11, Q 10, Ho Chi Minh
Family 슈퍼마켓	Phu My Hung, Nguyen Van Linh, Q7, Ho Chi Minh

부록3**딸기 수입 식품업체 및 유통회사 명단****1. 수입 업체****1) 2FM Viet Nam**

주 소 : Ha Noi, Cau Giay, Nguyen Khang, 51

전 화 : 04.6327.6565

이메일 : support@muahoaqua.vn

2) 베트남 V-FOOD회사(주)

주 소 : Ha Noi, Hoan Kiem, Hang Muoi 22

전 화 : 0944 28 38 88 - 0438 290 999

이메일 : luontuoisach@gmail.com

3) CAO NGUYEN 화초회사(주)

주 소 : Son La, Moc Chau, Dong Sang, Bang Anh

전 화 : 0979 747 558

웹사이트 : www.hoacanhmocchau.vn

4) VITA FRUITS

주 소 : Ha Noi, Thanh Xuan, Nguyen Huy Tuong, 28

전 화 : 0964338181

팩 스 : 04 62 915181

이메일 : vitafruits.vn@gmail.com

웹사이트 : http://vitafruits.vn

2. 식품 유통회사

1) QUA TANG TRAI CAY

웹사이트 : <http://www.quatangtraicay.com/lien-he-175.html>

소매점 : Ho Chi Minh, Phu Nhuan, 15, Hoang Van Thu, 25 QTTC01: 08 Song Hanh, P.
Trung My Tay, 12, HCM

2) THUY ANH 신선한 과일 브랜드

전 화 : 0982 013 648

주 소 : Ha Noi, BA DINH, THANH CONG, 4호

이메일 : thuyanhfruits@gmail.com

웹사이트 : <http://thuyanhfruits.com/vi/contact/>

3) Shophoaqua.vn

주 소 : Ha Noi, Thanh Xuan, Nhan Hoa, 100

전 화 : 0988.888.888

이메일 : info.daunhotcongngghiep360@gmail.com

웹사이트 : shophoaqua.vn

4) NGOCFRUITS.COM

1호지점 : Ha Noi, DONG DA, VINH HO, 39

5) HOA QUA SO 1

1호지점 : Ha Noi, DONG DA, DANG TIEN DONG, 1

2호지점 : Ha Noi, DONG DA, TRUNG TU, 104/B3

전화 : 0912.192.298

웹사이트 : www.hoaquaso1.com

부록4

수입식품 안전위생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규정

A/ 보건부

1/00 수입은 식품안전위생을 보장해야하며 보건부의 제23/2007/QĐ-BYT호 결정서를 준수해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23/2007/QĐ-BYT

하노이, 2007년 3월, 29일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위생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규제” 발행에 대해

보건부의 기능, 직무, 권한 및 구조에 대한 정부의 2003/5/15일자 제49/2003/NĐ-CP호 의정서에 의거하여;

식품위생안전규정의 몇 가지 조항을 세부규정하는 정부의 2004/9/7일자 제163/2004/NĐ-CP호 의정서 및 2003/7/26일자 제12/2003/PL-UBTVQH11호 식품위생안전법령에 의거하여;

보건부-식품안전위생국 국장 및 법무처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위생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규제” 본 결정서와 함께 발행한다.

제2조. 본 결정서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후 적용된다.

“수입 식품에 대한 품질 국가 검사 규제” 발행에 대한 보건부 장관의 1997/7/17일자 제1370/1997/QĐ-BYT호 결정서를 해제한다.

제3조. 사무실 이사, 최고관리자, 보건부-법무처, 식품위생안전국 국장, 각 지방 보건처 사장, 중앙도시, 부처들 산하관련 단위의 관리자 등은 본 결정서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장대결

차관

Trinh Quan Huan

TRINH QUAN HUAN

규제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위생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규제”

(보건부 장관의 2007년 3월 29일자 제23/2007/QĐ-BYT호 결의문과 첨부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조정 범위

1. 본 규제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포함한 국내 소비된 수입된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위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권한, 책임 및 국가적 검사 방식, 내용 및 수속을 규정한다(이하 “식품”이라고 한다):
 - a) 산업가공된 식품 원료가 직접 생산용 재정재 혹은 재포장이 필요가 없다;
 - b) 식품가공에서 사용된 물질(가공보조제, 식품 첨가물);
 - c)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식품(즉석 식품);
 - d) 본 조항 제4항에서 규정된 식품(안전, 질병에 대한 위기 정보가 있거나 보건부의 서면으로의 요구된 경우).
 - đ) 시기별 보건부가 발행한 기준을 공포해야 할 명목에 속한 기타 제품.
2. 본 조항 제1항에서 규정된 식품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증서 중의 하나가 발급되어야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 소비하게 된다:
 - a) 수입 요구를 만족시키는 증명서.
 - b) 서류만 검사하는 화물 패키지 통지서.
3. 수입 개인, 조직이 통보받는 수입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화물패키지는 본규 제 제16조 제7항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된다.
4. 아래와 같은 식품들은 국가적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 a) 수입세를 부과해야 할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 소비용 사람과 함께 운반되는 식품.
 - b) 법률 규정에 따른 인도적 기증물, 외교 BAG 안에 있는 화물, 영사 BAG 안에 있는 화물인 식품.
 - c) 임시 수입, 재수출 식품.
 - d) 운송, 환적 식품.
 - đ) 보세창고에 맡긴 식품
 - e) 연구 혹은 실험 샘플인 식품.
 - g) 전시회에 참여하는 샘플인 식품.

- h) 국경 국민간의 교환된 식품.
- i) 수출용 외국인 발주자에게 베트남 기업들로부터 가공된 식품.
- k) 정제, 재가공 과정을 거쳐야 할 원료(식물석유, 담배 나뭇잎 및 담배를, 식품가공용 약초).
- l) 동물 검역 혹은 식물 검역 필수 명목에 속한 생식품, 전처리 식품.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제 제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식품을 수입하는 모든 개인, 조직은(이하 “화물 주인”이라고 한다) 시장에서 소비하기 전에 본 규제 규정에 따른 식품 안전위생 품질에 대한 국가적 검사 기관의 검사를 등록해야 하며 검사도 진행해야 한다.

제3조. 용어 해석

1. 본 문서에서 기록된 식품안전위생품질이란(“식품안전”이라고 약칭한다) 검사 시점 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안전하며 법률 규정에 알맞게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화물 주인이 공포된 화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 기초 기준에 맞춘다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다.
 확정 및 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이 포함된다 : 외관 기준, 주요 품질 기준, 품질 제시 기준, 영양가치, 화학, 물리, 미생물상 위생 기준; 원료 성분 및 식품 첨가물; 유통기간; 사용 및 보관 안내; 포장 규격 및 포장 재료; 상표 내용.
2. 식품안전위생품질상 국가적 검사란 식품안전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화물 LOT, 제품 LOT를 검사, 검열, 확인하도록 기술 능력이 충분히 갖추며 보건부의 서면으로 지정된 국가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3. 검사 등기관 화물 주인이 통관 허락 이전에 식품안전위생품질상 국가검사기관에(이하 “검사기관”이라고 약칭한다) 제1조 제1항에서 규정된 화물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를 등기한다는 것이다.
4. 화물 LOT란 전부의 한 개의 수출 선적이며 한 제품 LOT 혹은 같은 한 종류의 많은 제품 LOT 혹은 다른 많은 종류의 제품 LOT일 수도 있다.
5. 제품 LOT란 같은 한 선적에서 같은 제품 이름, 상표, 제작자 및 유통기한 및 생산일이 있는 각 제품들을 말한다.
6. 기초 기준이란 화물 주인이 자체로 구축, 공개 및 법률 및 소비자 앞에 책임을 진한 제품(같은 제품 이름, 상표, 주요 품질기준, 위생기준이 있음)의 품질, 식품안전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말한다.
7. 위생기준이란 제품 품질이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학, 물리, 미생물 요소들이 최대로 제품에서 허용된 한도 혹은 규정임을 말한다.
8. 주요 품질 기준이란식별, 분류 및 다른 종류의 식품과 구별토록 제품의 특징을 가진 주요 영양가치가 있는 정량 혹은 한도를 말한다.

9. 품질 제기 기준이란 제품 품질의 안정성 및 제품의 주요 구성 물질 함량을 확정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들을 말한다.
10. 제품 기준 공포 증명서란(제품기준 증명서라고 약칭한다) 베트남 법률규정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에 부응한 식품 품질, 위생, 안전 기준을 공포한 화주에게 발급하는 관할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제 II 장

검사 방식

제4조. 검사 방식

1. 엄격한 검사 : 아래와 같은 경우 중의 하나에 속한 같은 LOT의 모든 제품 LOT에 대한 식품안전을 전면적으로 검사, 평가하도록 확률 샘플을 채취하거나 의문 이 있는 곳에서 샘플을 채취한다 (최소한 샘플량이 충분하다):
 - a) 검사기관 혹은 세관기관에서 포장이 고장나서 침입되거나 혹은 운송 수단의 식품 보관 조건 유지 시설이 작동하지 않아서 오염 증후 의심을 발견하는 높은 위기가 있는 식품 명목에 속하며(식품안전위생 법령의 일부 조항 세부 실행규정상의 정부의 제163/2004/NĐ-CP호 법령(2004년 9월 7일자) 제14조항);
 - b) 외국인 가공기업으로부터 수입되었으나 검사기관에서는 사람으로 옮길 수 있는 위험한 병원균이 있거나 혹은 오염된 원료가 있는 지역에 속한다는 것을 통보를 받거나 알리게 된다.
 - c) 그 전의 수입 차례 시 수입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 d) 보건부에서(식품안전위생국) 건강에 대한 위기가 있는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발견함으로써 검사방식을 적용할 것을 요구받는 서면이 있다.
2. 일반 검사 : 본 조항 제1, 2,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속하지 않는 제품 LOT에 대한 식품 품질, 위생, 안전 기준을 일부 외관검사 및 실험을 하도록 충분한 확률 샘플을 채취한다(우발적).
3. 완화검사 : 아래와 같은 경우 중의 하나에 속하면 서류와 비교하도록 샘플을 채취하지 않아도 된 제품 LOT의 동일성, 상표 부착, 외관 검사를 위한 대표적 샘플만 채취한다:
 - a) 공개된 제품(GMP, HACCP기준에 부합한 증후가 있거나 최저 위기에 속한 식품;
 - b) 최소한 연속 2차 검사를 거친 뒤 안정된 품질이 있거나 혹은 보건부의 완화 검사 조건이 충분하다는 확인 서류가 있는 같은 종류 같은 원산지가 있는 식품;
 - c) 식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실험 샘플 검사를 거친 같은 종류 같은 원산지가 있는 식품;
 - d) 첨부 생산국에서 제3자의 분석 결과표가 있거나 수입 이전 검사된 제품 LOT 및 같은 종류 같은 원산지가 있는 식품;

- ㄸ) 각 시기별 품질 측정기준 총국에서 인정하며 공개한 공동지역 시장 혹은 수출국의 기준에 적합한 마크가 있음을 인정된 화물 명목에 속한다.
 - e) 보건부 및 품질측정기준총국으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된 공동지역 시장 혹은 수출국의 적합 마크(적합성 마크)가 있음을 확인한다.
4. 서류만 검사한다 : 식품 품질 위생 안전국이 본 규제 제5조에서 규정한 서류만 검사한다는 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한 서류가 작성된 이후 서류만 검사한다는 제품 LOT 통지 받도록 검사 등록 서류만(제품 샘플을 채취하지 않는다) 접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검사 방식에 속한 제품은 한 화물 주인의 같은 종류 제품에 대한 1년간 수입 차례 중의 어떠한 차례에든지 일반 검사 혹은 완화 검사만 거치면 된다.

제5조. 서류만 검사한다는 방식을 적용하게 된 수입식품(검사, 샘플 검사 면제)

1. 식품품질, 위생, 안전 검사 활동에서 베트남과 상호 인정된 국제조약을 체결 한 국가의 권한이 있는 조직으로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확인받는 수입식품.
2. 베트남 기준 혹은 베트남 내 적용이 허용된 외국인, 국제 기준에 부합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 인증된 생산, 경영 개인, 조직의 식품이며 기준 부합성이 인증된 수입식품.
3. 같은 원산지가 있으며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그 전에 5차례 검사를 받은 같은 종류의 제품 LOT들.
4. 식품 안전 위생국은 제품의 주인이 본 조항 제1, 2, 3항에서 규정한 3개 조건중의 하나를 만족시켰으며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검사기관의 요청에 근거하여 “서류만 검사하는 제품”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5. 서류만 검사에 속한 제품 LOT들이 식품 품질, 위생, 안전상 베트남법 위반 징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갑자기 검사될 수 있다.

제 III 장

검사 수속 및 프로세스

제6조. 검사 등록 서류

제품 주인은 화물이 항구에(관문) 도착하기 전 최소한 5일 이전에 제7조 및 제8조항에서 규정한 검사기관 중의 하나에서 식품안전상 국가 검사를 등록해야한다

1. 식품안전상 국가적 등록 서류가 아래와 같이 포함된다:
 - a) 식품안전상 국가적 검사 등록서.
 - b) 기초기준의 합법 사본(식품안전위생국의 확인 도장이 있음) 혹은 보건부의 제42/2005/QĐ-BYT호 (2005년 12월 8일자)호 결의문에 첨부된 기준 공포 규제에서 규정한 식품안전위생국의 통관 허용된 제품 확인(제품 기준 미공개 시).

- c) 규정대로 세관 수속을 진행하는 서류;
 - d) 고온도로 살균된 가공된 동물 및 식물으로부터의 식품에 대한(농업개발부 혹은 안전위생국에 의한 전염병이 서면으로 공개될 때만 요구한다)원산국의 국가 기관의 의료증명서;
 - ㄸ) 기준이 미공개된 식품에 대한(만약 있으면)지정된 실험실 혹은 기업 사장 혹은 권한이 있는 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있거나 실험분석 결과 증명서 사본(Certificate of Analysis);
 - e) 완환 검사, 서류만 검사 방식을 적용하게 되도록 관련 필요한 증서들(만약 있으면).
2. 수출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상 국가적 검사 등록은 베트남과 다른 나라, 각 국제 조직 간의 쌍방 혹은 다방 협약 관계에 따르거나 혹은 수출자(제품의 주인)가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제품 LOT, 제품 LOT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인하는 용역 계약서를 자발적으로 진해할 것을 요청할 때 이루어진다.

제7조. 지정된 검사조직

1. 검사기관은 식품안전상 국가적 검사 기능을 진행하도록 보건부에 의한 지정되어 있는 기술 능력과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전문 기술적 기관, 단위들이다.
2. 국가의 기술 및 조건이 충분히 갖춘 관리, 조직, 기술 단위, 연구 요구에 따라 보건부에 의하여 수입 식품 화물에 대한 식품 품질 안전 위생상 국가적 검사기능을 진행하도록 지정함을 고려되거나 제8조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 검사지정 된다.
3. 과문에서 식품 안전상 국가적 검사기능을 진행하도록 서면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경의료 검역기관은 보건부의 서면으로의 요청이 있을 때만 별도의 프로세스, 규정대로 관리 샘플을 채취한다.

제8조. 특별 경우에 검사기관 지정

화물 주인은 상상 검사기관의 주소와 멀리 한 곳에서 화물을 저장하면 보건부에 서면으로 요청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검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식품 안전위생국에 임시적으로 같은 지역 내 소재 기술기관이 제품 LOT를 실제적으로 검사, 실험을 진행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

제9조. 단독 검정 경우

수입 주인은 하역과정,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식품이 손실되며 상이 된 것을 발견하면 외국 측이 국제 통례에 따라 배상을 받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단독 검정을 하면 주인은 식품안전상 국가적 검사 없이 단독 검정 기관에 증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제10조. 검사 프로세스

1. 검사기관은 제품 LOT(한 제품 혹은 많은 제품 LOT이 포함될 수 있다)에 대한 검사 방식을 예측하도록 검사 등록 서류를 접수하고 고려하고 서류만 검사방식에 속한 제품들을 제외하고 검사 등록서를 확인하면 본 규제의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한 갑자기 검사해야 할 필요가 없는 서류만 검사할 제품 LOT 통지를 발행한다.

2. 주인이 등록한 지점에서 검사 및 샘플 채취를 진행한다. 주인은 검사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모이는 지점에서 일부분의 LOT를 소비하거나 분포시키면 검사기관은 통과한 세관 기관 및 식품안전위생국에 회수 방안 혹은 적합한 대치를 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3. 검사 및 샘플 채취 과정에서 서면을 작성한다. 이런 검사 서류들은 관련측의 사인이 충분히 있어야 하며 화물 LOT의 일반적 검사 서류에서 보관된다.
4. 검사, 실험 근거 : 검사 등록 서류 및 화물의 역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 검사 방식, 샘플 수량, 실험 기준, 실험 방식 및 샘플 검사 진행을 한다:
 - a) 제품 기준이 공개된 식품에 대하여는:
 - 일반검사 혹은 완화검사 방식을 결정하도록 기초 기준에서 공개된 내용에 의거 제품 샘플과 비교한다;
 - 유통기간 및 상표 부착 내용;
 - 위기 정보가 있거나 보건부의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기타 안전 요구사항.
 - b) 제품 기준이 미공개된 식품에 대하여는 연속 검사 5차례 중의 최소한 2차례를 일반 검사로 한다:
 - 식품안전 제시 검사;
 - 유통기간 및 상표 부착 내용;
 - 위기 정보가 있거나 보건부(식품안전위생국 혹은 보건부의 감사)의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기타 안전 요구사항.
5. 검사 결과 비교 근거:
 - a) 식품안전위생국(제품기준증명서가 교부받았음)의 도장을 찍은 제품의 기초기준.
 - b) 제품이 미공개 될 경우에 화물마크 부착, 식품품질, 위생, 안전상 베트남에 강제로 적용된 기준, 규정들.
 - c) 베트남의 규정이 없으며 식품안전위생국에 의하여 식품이 허용된다는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식품 첨가물, 특별 식품에 대한 지역 혹은 국제 규정(CODEX).
6. 검사 이후 결론 : 제11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7. 검사 결과 통보 발급이 본 규제 제14조 제2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제11조. 검사 이후 결론

1. 화물 LOT이 규정대로 수입 요구를 만족시키면 검사기관은 수입 요구 만족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서류만 검사하는 화물 LOT의 통지를 발급한다.
2. 만약 화물 LOT는 규정대로 수입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검사기관은 수입 요구 사항 미충족 통지와 실험 결과서를 화물 주인 및 화물이 도착하는 세관기관에 1부씩 발송한다. 동시에 보건부(식품안전위생국)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중에 화물 LOT 대처 방안도 제기한다. 15일(공휴일도 포함됨) 이내 식품안전위생국은 적합한 대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IV 장

검사 비용, 수수료

제12조. 비용, 수수료 납부

화물 주인은 재무부의 제80/2005/QĐ-BTC호(2005년11월17일자) 결의와 첨부된 식품품질안전위생 관리 비용, 수수료 징수 및 납부 한도, 관리 및 사용 규정에 따른 검사 비용 및 수수료를 검사 결과 통지를 발급받기 전에 검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검사 비용, 수수료 관리

검사 비용, 수수료 관리는 국가의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V 장

책임 및 권한

제14조. 검사기관의 책임

1. 지정된 범위 내 국가적 검사를 진행하도록 1영업일 이내 검사 등록서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2.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 기간에 맞춰서 통보한다:
 - a) 수입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화물 LOT 확인서:
 - 검사 등록 샘플을 채취한 날로부터 본 규제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엄격 검사 방식에 의거 검사를 진행해야 할 대상에 속한 식품에 대한 진행 중인 실험 방식의 규정에 따른 실험이 필요한 시간과 합치면 5영업일 이내.
 - 검사 등록 샘플을 채취한 날로부터 본 규제 제4조 제2,3항에서 규정된 완화 검사 및 일반 검사 방식에 의거 검사를 진행해야 할 대상에 속한 식품에 대한 진행 중인 실험 방식의 규정에 따른 실험이 필요한 시간과 합치면 2영업일 이내
 - b) 서류만 검사하는 화물 LOT 통지 : 본 규제 제5조에서 규정도니 식품에 대한 항구에 도착한 때부터 2영업일 이내.
 - c) 엄격 검사 방식에 속한 검사 결과 통지 및 수입 요구 미충족 화물 LOT 통지는 수입 화물 주인에게 교부할 때 제품 LOT별 실험 결과표와 첨부하여 발송해야 하는 동시에 보건부(식품안전 위생국)에 보고해야 한다.
3. 요구가 소요될 때 재실험하도록 각종 식품에 대한 규정에 따른 식품 샘플을 보관한다. 그 기간이 초과하면 검사기관은 샘플을 받도록 주인에게 통보하거나 규정대로 샘플을 처리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4. 수입 식품 LOT에 대한 식품 안전 검사, 확인을 객관적이며 진실하게 정확히 보장한다. 검사, 실험 프로세스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5. 자신이 진행한 식품안전검사 및 확인에 대한 주인의 고발 접수 및 처리한다. 검사 및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책임을 진다. 검사기관은 현행 규정에 의거 배상도 해야 한다.
6. 검사 결과 통보 발급날로부터 3년 이내 검사 서류를 보관하며 관할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관 서류를 제출한다.
7. 매 분기 보고서(각 분기 말의 10일 뒤)는 검사 기관은 보건부(식품안전위생국)에 본 결의와 첨부된 5별칙 및 6별칙에 따라 발송하며 완환 검사, 서류만 검사 인허가를 발급되도록 고려할 식품 명목도 제기한다.
8. 검사기관은 각 호의 경우에 보건부(식품안전위생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 a) 근무지 변경, 확대;
 - b) 활동 임시적 정지 혹은 종료.

제15조. 검사기관의 권한

1. 화물 주인에게 본 규제 제6조에서 규정된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 화물 보관, 임시 보류 곳에서 출입하거나 검사 및 샘플 채취를 위하여 검사기관에서 기업이 전반 제품 LOT를 제시하도록 허락해 준다.
3. 본 규제에서 규정된 방식 및 프로세스에 따라 식품을 검사 진행하며 역동적으로 5번 검사 중의 일반 검사 방식을 2번만 적용할 권한이 부여된다.
4. 화물 주인이 검사 등록했으나 검사를 위한 화물을 제시하거나 검사 결과가 수입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검사 결과 통지 및 관문 세관기관 통지를 발급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에 “검사 결과 대기 화물 LOT”이란 내용으로 검사 등록 확 인서를 발급하며 관문 세관기관에 검사 결과가 나와야 통관 허락을 하는 데에 협조할 것을 통보한다:
 - a) 검사 등록을 요청한 수입 화물 LOT이 식품안전상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 b) 같은 화물 주인에게 그 전에 수입된 같은 종류의 화물 LOT가 식품안전상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 c) 본 규제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엄격 검사 방식에 속한 화물.
 - d) 보건부에 의한 발행된 사용 허용된 식품첨가물 명목 외에 수입된 식품첨가물 및 기준이 미공개 되거나 식품 안전 위생국으로부터 CODEX 기준 및 원산국의 자유 유통 허가과 비교한 뒤 식품 가공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 되지 않는 종류.
 - e) 식품안전위생국으로 인한 제품기준 공개 증명서 미발급 혹은 서면으로의 미확인된 각종 특별 식품(치료 영양식품, 중환자용 먹는 음식(스팀형), 보충식품, 영양제 강화 식품, 건강식품).

6.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은 화물 LOT를 처리할 것을 감독하며 / 혹은 지방 권한이 있는 의료기관에 지역 내 화물 LOT를 처리 감독 및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제16조. 수입 화물 주인의 책임

1. 세관수속을 하기 전에, 주인은 본 규제의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로검사 기관에 식품안전상 국가적 검사를 등록해야 하며 규정대로 검사 비용,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2. 화물 LOT는 세관기관으로 인하여 보관 조건이 충분히 있는 창고로 모이도록 허락받으면 주인은 검사기관이 식품안전상 국가적 검사를 진행하도록 역동적으로 화물 원상과 세관을 신고한 서류 및 검사 등록서를 제시해야 한다.
3. 수입 식품은 검사기관이 본 규제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사결과 통지중의 하나를 발급해야 사용, 유통에 들어가도록 허락한다.
4. 공개된 제품 기준으로 혹은 화물 상표 부착, 식품 안전상 내용을 강제로 적용하는 대로 수입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화물 LOT에 대한 권한기관의 결정 대기중 혹은 검사 결론 대기 동안 검사된 화물 보관상 책임을 진다.
5. 수입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각 화물 LOT를 처리하는데 관리기관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다.
6. 최소한 기타 인정된 실험실의 화물 LOT분석 확인서로써 식품안전상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재검사할 것을 요청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데 그중에 결과가 본 규제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된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근거에 부합하다.
7. 아래와 같은 처리 방안 중의 하나로 식품안전위생국에 건의할 수 있다:
 - a) 재활용: 주인은 검사기관의 승인을 득하면 검사기관에 재활용 방법 및 주소를 보고해야 한다. 재활용한 뒤 주인은 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처리하도록 재활용된 화물 LOT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작성한다:
 - 만약 화물 LOT는 재활용 이후 및 / 혹은 상표 부착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 검사기관은 재활용 이후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보건부(식품안전위생국)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기하는데 그중에 베트남 시장에서 소비하도록 “화물 LOT는 재활용 이후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켰다”라는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 재활용 이후라도 화물 LOT는 여전히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검사기관은 재활용 이후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통지를 발행하며 보건부(식품안전위생국)에 화물의 주인이 화물 LOT를 파괴시키거나 본 규제 제6항에서 규정한 대로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용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관리하도록 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
 - b) 상표 내용 수정 이후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용도를 변경시킨다.
 - c) 재수출 : 주인은 서류를 완료하도록 검사기관에 재수출 증서를 제출해야한다.

- d) 처분(파괴) : 주인은 처분기관과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처분 관리 지역에 있는 환경관리기관 혹은 의료청의 처분 진행 시간, 장소,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가져야 한다.
8. 주인은 본 규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면 현행 법규에 따라 벌칙을 감당해야 한다.

제17조. 수입 화물의 주인의 권한

1. 화물 LOT는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는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화물 주인은 서면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화물 검사기관에 검사 결과를 재검토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은 뒤:
 - a) 만약 재검사 결과는 최초 검사 결과와 반대하면 주인은 재검사용 비용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
 - b) 재검사 결과는 최초 검사 결과와 동일하면 주인은 재검사 비용에 부담이 있다.
2. 주인은 검사기관 및 보건부(식품안전위생국)에 국제법으로 인한 규정 혹은 오염 함량 및 사람에게 사용되는 허용된 사소한 오류 유형이 허용된 국가로 인한 기준에 맞춘 실험실에서 증인된 샘플 분석 결과,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3. 주인은 식품안전위생국에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화물 LOT에 대한 처리 시 본 규제 제16조 제7항에서 규정된 방법 중의 하나를 요청할 수 있다. 제기한 방법은 승인을 득하도록 세부적이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맞춰야 한다.
4. 고발 및 고발, 고소 처리가 고발, 고소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5. 주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통지 수령 기간을 단축시키며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다:
 - a) 식품안전위생국에 서면으로 본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면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는 통지를 발급받은 2번 이후 완화 검사 방식을 적용하게 되며 본 규제 제5조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면 서류 검사 방식에 동의하도록 요청한다.
 - b) 검사기관이 완화 검사 방식을 적용하도록 본 규제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제품
 - c) 상시 화물 저장 지점 근처에 주소가 있는 기술 기관에서 식품안전위생상 국가적 검사를 진행하게 되도록 식품안전위생국에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제의한다(본 규제 제8조항에서 기재한 규정).

제18조. 식품 안전 위생국의 책임

1. 식품안전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수입 화물 LOT에 대한 처리 방법결정 및 안내.
2. 수입 화물 LOT에 대한 검사 방식 결정 : 완화 검사, 서류만 검사(국가검사기관)(검사기관의 제의 혹은 주인의 요청에 근거).

3. 심사를 진행하도록 관련 단위와 협조하며(보건부 감사, 유관 각 국청) 보건부에 수입 식품 화물에 대한 식품품질안전위생상 국가적 검사 기능을 진행하도록 참여 하는 국가의 기술 단위, 연구 기관을 지정하거나 본 제8조에서 규정된 특별한 경우에서 검사 지정받음을 제안을 제기한다.
4. 국가 검사기관의 전문 능력을 정기 검사하며 보건부에 국가 검사기관에 대한 임시 정지, 확대 혹은 한제 등과 같은 형식을 제의한다.
5. 보건부에 매분기 연속 2번 정기적 보고를 진행하지 않는 검사기관에 대한 식품 안전상 국가적 검사 권한, 의무를 임시적으로 정지시킬 것을 제의한다.
6. 주인, 국가검사기관의 건의 사항을 처리하고 보건부에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처리를 제의한다.
7. 매년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위생국은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적 검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시키며 보고해야 하고 시기별 적합한 관리 방법을 제기한다.

제 VI 장

실행 조직

제19조. 규제 실행 조직

1. 식품 안전 위생국은 본 규제를 실행할 것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2. 정기적으로 2년에 1번씩 혹은 불시에 보건부 감사가 식품안전위생국 실무자와 협조하여 검사기관의 본 규제를 실행하는 것을 검사, 감사를 진행하며 보건부 지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베트남 신선딸기 시장 조사

발 행 일 : 2015. 12.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aT 본사 수출정보부
061) 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 931-0872

자료게재 : www.kati.net
